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30일, 서왕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11.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12.26.)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2.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왕진 의원)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함.

특히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해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복잡하고 여러 단계의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질서있는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적인 입지 선정,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및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업 등 지역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에너지 체계의 신속한 전환과 재생에너지 공급이 시급한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과 탈탄소 경제·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 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9.)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